

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신설기구 평가 기간 연장(안 별표10)

가. 개정 이유 및 내용

- '26년 신설기구 평가 결과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간을 '2026년 9월 30일'에서 '2028년 9월 30일'로 연장

나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특이사항 없음

다. 입법효과 : 치안 현장 대응 역량 제고